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43 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이정헌·조인철·정동영

전현희 • 채현일 • 박민규

복기왕 · 황정아 · 박홍배

김영환 · 권향엽 · 양부남

김기표 • 문금주 • 백승아

박희승·김 유·김 현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·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 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 임.

그러나,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,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,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.

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

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,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,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.

반면,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,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있으며, EU에서는 DMA(Digital Market Act)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진행 중인 상황임.

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9호 중 "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"를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(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 외의 자에 의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금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금지행위) ① (생 략)	제50조(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
	승)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	9
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	
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	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
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	업자에게 웹브라우저에서의
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	결제 등 자기 앱 마켓 또는
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	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
<u>위</u>	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
	나 금지하는 행위_
<u><신 설></u>	9의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
	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
	에 있어 모바일콘텐츠 등 제
	공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자
	기의 계열회사(「독점규제 및
	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
	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
	말한다) 외의 자에 의한 「전
	자금융거래법」제2조제19호
	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
	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제한
	하거나 금지하는 행위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생 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